

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이 회를 ‘천주교새남터성당사목협의회’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회는 본당 공동체에 대한 제반 사목활동과 본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새남터 성지의 개발·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

제 2 장 조직과 임무

제3조 (구성)

- ① 이회는 주임사제, 보좌신부(부제 포함), 수도자,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분과장 및 부분과장,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은 본당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- ③ 부회장, 총무, 부총무 및 분과장, 부분과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- ④ 위원은 회장이 당해 분과장과의 협의 하에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.
- ⑤ 이회에 주임사제가 임명하는 고문을 둔다.

제4조 (상임위원회)

- ① 이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간의 업무조정 및 분과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.
- ② 상임위원회는 주임사제, 보좌신부(부제 포함), 수도자와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(이상 “회장단”이라한다)와 분과장, 부분과장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분과)

- ① 사목협의회는 회장단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부분과장 및 위원을 둔다.
 1. 기획분과, 2. 재정분과, 3. 성지분과, 4. 홍보분과, 5. 전례분과, 6.교육분과, 7. 선교분과, 8. 가정사목분과, 9. 청소년분과, 10. 노인사회사목분과, 11. 시설분과, 12. 구역분과(여성, 남성).
- ② 기획분과는 본당 사목계획의 수립을 총괄하고 각 분과업무를 조정한다.
- ③ 재정분과는 본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④ 성지분과는 성지의 보존 및 개발, 시설운영, 안내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홍보분과는 본당 홍보및 본당 사료의 관리 업무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
- ⑥ 전례분과는 미사전례 및 교회예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- ⑦ 교육분과는 신자재교육(교구계획 포함)과 인재양성, 피정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⑧ 선교분과는 선교활동, 예비신자 및 냉담자인도, 신앙단체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- ⑨ 가정사목분과는 성가정 속에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목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.
- ⑩ 청소년분과는 유치부, 초등부 및 중고등부 주일학교 운영과 청년 교육, 청년단체의 조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⑪ 노인사회사목분과는 지역사회개발, 불우이웃돕기,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과 노인대학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.
- ⑫ 시설분과는 본당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⑬ 구역분과는 구역의 복음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.

제6조 (임무)

- ① 회장은 이 회 및 본당 평신도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(부총무)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필하여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, 총회의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- ④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하며, 부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고 분과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임기) 모든 사목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3 장 회 의

제8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결의 및 필요시 주임사제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제9조 (상임위원회)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 (분과위원회)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1조 (의결정족수)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2조 (재정) 이 회의 재정은 회비, 본당운영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5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1999. 12. 5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준용규정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.

제3조 (구 회칙의 폐지)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모든 유사한 규약 등은 폐지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. 12. 5.부터 시행한다.

제 7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1. 이 회칙은 2003. 2. 9.부터 시행한다.

2.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장, 부회장, 총무(부총무), 각 분과장(부분과장) 및 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 8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1. 이 회칙은 2005. 1. 16.부터 시행한다.

2.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장, 부회장, 총무(부총무), 각 분과장(부분과장) 및 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 9 장 부 칙

1조 (시행일) 1. 이 회칙은 2010. 1.18.부터 시행한다.

제 10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1. 이 회칙은 2011. 1.18.부터 시행한다.